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직접 지급 관련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, 제7항의 규정이 삭제('02.12월)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안

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